

【서식 1】

수의계약 사유서

1. 법적근거 :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(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(2011.09.14)에 의거함.

□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

구 분	유 형	주요 내용				견적서 제출
1인 견적서 제출 가능	금액기준	종합공사	전문공사	전기·정보·소방 ·기타공사	용역·물품·기타	·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
		·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	·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	·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	·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	

2. 공사내용

물품명	물품내용	유형	공사 금액	계약 방법	비고
발열체크기 (2대)	- 발열체크 - QR코드 - 자동 손소독 - 스피커	물품	4,000천원	수의 계약	

3. 구체적 사유

- 해당계약은 추정가격 약 4,000천원의 물품 계약으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함.
-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(경영지원팀장)은 1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레가격, 유사거래 실레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고 수의계약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함.

2021.5.21.

보고자 : 경영지원팀장 이 진 우